

혁신도시 건설 특별위원회 활동계획(안)

국토균형발전 정책의 일환으로 추진중인 공공기관 지방이전을 위한 혁신도시 건설사업의 차질 없는 추진을 위한 세부 활동계획을 수립, 시행함으로써 효율적이고 적극적인 특별위원회의 활동을 도모하고자 함

I. 기본방향

- 2008년도 전체 의사일정을 감안하여 특별위원회 탄력적 운영
- 한국토지공사울산혁신도시건설단의 추진일정을 고려하여 단계별 활동

II. 법적근거

■ 지방자치법 제56조(일부개정 2007.5.11 법률 제8423호)

제56조 (위원회의 설치) ① 지방의회는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원회를 둘 수 있다.

② 위원회의 종류는 소관 의안과 청원 등을 심사·처리하는 상임위원회와 특정한 안건을 일시적으로 심사·처리하기 위한 특별위원회 두 가지로 한다.

③ 위원회의 위원은 본회의에서 선임한다.

■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56조(전부개정 2007.10.4 대통령령 제20306호)

제56조 (특별위원회의 설치) ① 특별위원회는 여러 개의 상임위원회 소관과 관련되거나 특별한 사안에 대한 조사 등이 필요한 경우에 본회의의 의결로 설치할 수 있다.

② 제1항에 따라 특별위원회를 설치하려는 때에는 그 활동 기간을 정하여야 한다. 이 경우 본회의의 의결로 그 활동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.

③ 특별위원회는 활동 기간이 끝나기 전까지 활동결과보고서를 본회의에 제출하여야 한다.

■ 울산광역시중구의회 위원회 조례 제7조

제7조 (특별위원회) ①의회는 특정한 안건을 심사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본회의의 의결로서 특별위원회를 둘 수 있다.

②의회는 예산안과 결산을 심사하기 위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둔다.

③의회는 의원의 윤리심사 및 징계에 관한 사항을 심사하기 위하여 윤리특별위원회를 둔다.<개정 2007·03·12>

④특별위원회는 그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이 본회의에서 의결될 때 까지 존속한다

Ⅲ. 특별위원회 구성

1. 구성일시 : 2008. 3. 12(제108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)
2. 위원선임 : 5명
3. 위원장 및 부위원장 호선 : 2008. 3. 12
(혁신도시 건설 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)
4. 구성현황

위원장	부위원장	위 원		전문위원	직 원
		소 속	성 명		
황 세 영	박 성 만	내무위원회	박 문 태	강 종 진	김 경 수
		건설환경위원회	권 순 정		
		내무위원회	장 정 옥		

Ⅳ. 특별위원회 활동계획

1. 활동기간 : 2008년 3월 12일 ~ 2009년 3월 11일(1년간)
2. 대상사업
 -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
 - 대상사업 추진현황 : 별지1
3. 위원회 회의
 - 시 기 : 2008년도 전체의사일정을 감안하여 수시로 개최
 - 장 소 : 혁신도시 건설 특별위원회 회의실
 - 내 용
 - 혁신도시 건설 추진상황 검토·심의개선요구사항 채택
 - 위원회 운영사항 협의
 - 기타 안건 처리

4. 활동방법

- 업무 추진상황 청취 및 관계자·참고인 출석 질의·답변
- 워크숍 및 토론회·간담회 개최 : 단계별(공구별) 또는 전체
- 대상지역 주민 여론 및 관련 전문가 의견청취
- 혁신도시 건설 현장방문 및 국내 타 도시 방문 자료수집
- 특별위원회 활동결과 보고서 작성 및 홍보

V. 특별위원회 활동 추진단계

구 분	활 동 계 획	추진시기	비 고
준비 단계	○ 혁신도시 건설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의결(제108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)	‘08. 3. 12	
	○ 위원회 구성 : 5명		
	○ 제1차 위원회 회의 (위원장, 부위원장 선임)	‘08. 3. 12	
	○ 혁신도시 건설 추진 결의안 채택	‘08. 4. 24	
	○ 활동계획 작성 및 승인	‘08. 5월	
	○ 특별위원회 위원 간담회(토론회) · 해당분야 전문가·관계기관(관계관) 초빙 · 관련법령 이해, 중구 실태, 역할분담 ○ 혁신도시 건설 추진상황 청취(1차) · 혁신도시건설단, 중구 도시과 ○ 자료수집 등 현황파악	‘08. 5월 ~ ‘08. 7월	
추진 단계	○ 혁신도시 건설 등 실태 조사 · 현장 방문 및 추진사항 파악 · 관계인 및 참고인 질의 및 답변 · 사업 추진에 대한 주민여론 조사 ○ 문제점 및 부진사항 파악 ○ 혁신도시 건설 추진상황 청취(2차) · 혁신도시건설단, 중구 도시과 ○ 혁신도시 건설 국내사례 탐방 ○ 지역주민 및 전문가 의견수렴(토론회 등)	‘08. 8월 ~ ‘09. 1월	
	○ 특별위원회 활동결과 보고서 작성	‘09. 2월	
마무리 단계	○ 특별위원회 활동결과 보고서 채택	‘09. 3월	
	○ 특별위원회 활동사항 홍보		

※ 활동일정은 위원회의 의결로 조정 가능함.

VI. 행정사항

1. 특별위원회 활동이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집행부에 협조요청

- 업무보고 준비, 관계공무원 출석요구, 자료요청, 기타 회의실 사용 등
- 증인, 참고인에게 조사 3일전 출석요구
 - 울산광역시중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
- 증인, 참고인은 시간 엄수 참석하고, 부득이 불참사유 발생시 사전에 통보 조치
 - 울산광역시중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 제2항, 제3항

2. 소요예산 조치

- 2008년 당초예산에 편성된 의정운영 공통 업무추진비 및 국내여비 활용
- 추후 추가경정예산에 별도 편성